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52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임호선 · 임미애 · 박지원
이재정 · 장종태 · 안도걸
이상식 · 이정문 · 정춘생
강준현 · 김승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포함)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검사의 청구가 가능한 임시조치는 퇴거 또는 접근금지에 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유치장 유치, 상담위탁 등 다른 유형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사전 적

정성 여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재발과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현행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에 유치장 유치, 의료·상담위탁 등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고,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종류에 유치장 유치, 의료기관, 상담소 등 위탁을 추가하고,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 다. 임시조치의 한 종류로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둠(안 제29조제1항·제13항 및 제63조제3항).

라. 임시조치로서 구치소 등 유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5항).

마.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제5항 신설).

바.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로 강화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6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를 “법원에 제29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청구 또는 그 신청을”을 “청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3제1항 전단 중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와 피해자에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 검사와 피해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2개월”을 “3개월”로,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⑬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제2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임시 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을 “제29조제13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⑤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8조의3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u>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u>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u> ----- ----- ----- <u>법원에 제29조제1항 각 호</u> ----- -----.
② <u>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u>	<u><삭 제></u>
③ <u>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③ <u>제1항</u> ----- ----- ----- <u>제1항</u> ----- ----- <u>청구를</u> ----- ----- -----.

<u>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u>	<u><삭 제></u>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 ----- ----- 법원----- -----. ----- ----- ----- ----- -----.
② (생략)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시조치) ① ----- ----- ----- ----- ----- ----- -----.

1. ~ 3. (생략)

<신설>

4. ~ 6. (생략)

② (생략)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 ⑫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경찰관
-----서의 장, 검사와 피해자에게-----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
-3개월-----
-----2개
월-----.

-----제3호까지 및 제3호
의2-----

-----.

⑥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생략)

<신 설>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신 설>

⑬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
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
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
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
造)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
른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
른다.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
조치(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한다)
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삭제>

④ 제29조제13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

<u><신 설></u> ④ (생 략) 제66조(과태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u> 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	⑤ <u>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6조(과태료) <u>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u> -----. <u><삭 제></u> <u><삭 제></u>
---	--